한화투자증권

2025년 05월 29일
ESG

[ES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①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
  -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 상 규제차익 해소

-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보고서**
  - 1회: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 2회: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개정 후 공시 실태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보고서는 ①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②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발간될 계획이다.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목적,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2024년 말 기준 자기주식 비중이 5% 이상인 상장회사 515개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공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보유 목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조사 대상의 대다수가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다. 당장은 계획이 없더라도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검토하겠다',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 수립 후 결정할 예정이다'와 같이 첨언한 공시 사례는 있었다.

Comment

(상세한 내용은 p.7 참고)

종전의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으며,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지체없이 주식 실효(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일반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에 배분, 주가 안정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책 등 자기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경영상 기법이 가능하도록,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이 감독당국이 원활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면,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사익 추구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 법 시행으로 상장회사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금지되었으며, 경영권 방어 목적 또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현행 법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까지 명기하여 상세히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시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과거에 적용됐던) 자기주식 취득 직후 소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 등에 비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관련 법제도 변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6~7월에 걸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옴	·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 또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	· 자기주식 취득 이후 보유 규모, 처리계획(예: 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도록 함 · 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 상 규제차익 해소	· 그간 자기주식을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 또한, 자기주식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루어진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신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기주식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기주식 매입기간 종료 이후 1 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함 ·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앞서 [표1]에 기재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중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 법 시행 후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공시 실태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보고서는 ①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②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발간될 계획이다.

[표2] 법 개정 후 자기주식 공시 실태 보고서

회차	주제	설명
1회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 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이에, 2024 년 말 기준 자기주식 비중이 5% 이상인 상장회사 515 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공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함
2회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	· 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개정 전에도 처분목적, 처분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및 수,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은 공시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금번 개정에서 추가된 공시항목은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임 · 이에, 법 시행 이후(2024 년 12 월 31 일 이후) 공시된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조사하여 공시 내용의 구체성, 충실성 등을 살펴봄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근거 법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보유 현황, 목적, 취득·처분·소각 계획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자기주식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된다.

[표3]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근거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출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의 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3.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이사회의 이사직무집행의 감독권과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권한, 그 밖에 법인의 내부감시장치를 말한다]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4. 삭제 〈2013. 8. 27.〉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기준) 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생략)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략)

거. 영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④ 영 제168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4. 영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공시 실태 2024년 말 기준 자기주식 비중이 5% 이상인 상장회사 515개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공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자기주식 보유 목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조사 대상의 대다수가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다. 당장은 계획이 없더라도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검토하겠다',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 수립 후 결정할 예정이다'와 같이 첨언한 공시 사례는 있었다.

[표4] 자기주식 '보유' 관련 공시 사례

구분	1. 자기주식 보유현황[주1]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계획	4. 자기주식 처분계획	5. 자기주식 소각계획
A사		주가안정, 단주취득	없음	없음	없음
B사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C사		자사주 가격 안정 및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주식 취득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취득 계획이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소각 계획이 없습니다.
D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등	없음	없음	소각을 통해 '28년말까지 자기주식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
E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상의 효과적인 활용 및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의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활용에 관한 계획이 수립 및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여건 및 경영전략, 시장동향 및 주주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식을 활용할 예정이나 보고일 현재 추진 중인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여건 및 경영전략, 시장동향 및 주주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식을 활용할 예정이나 보고일 현재 추진 중인 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여건 및 경영전략, 시장동향 및 주주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식을 활용할 예정이나 보고일 현재 추진 중인 소각 계획은 없습니다.
F사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을 2023년 12월 2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자기주식 비중을 1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정기적인 임직원 보상 등 회사의 내부 역량 강화, 신사업 관련 인재채용 및 신사업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등 사업 전략적으로 다각적 활용 예정입니다.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으로 확정된 자기주식 소각 계획은 없으나, 산업현황, 영업현황, 중장기 설비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필요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겠습니다.
G사		가) 주주가치 제고 -본 회사는 주가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주가의 상승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경영 안정성 확보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경영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다) 지급 준비 자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인력 유치 및 보상을 위한 지급 준비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필요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대 효과 -주가 안정화를 통해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임직원 보상 및 인력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상황에서 계획 없음	현재상황에서 계획 없음	현재상황에서 계획 없음

		-본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H사		당사는 주주환원규모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2023.7.12, 2024.12.18)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코자 하며, 공시 내용대로 취득과 소각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하와 같이 기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2023.7.12, 2024.12.18)에서 자기주식 취득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기 공시된 공정공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12 공시에서 명시한 주주환원 방법: 자기주식 취득 -아래 사업년도 기간동안 총 400 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사업년도별 취득 목표 *2023 년 사업년도: 200 억원 [완료] (기 취득 50 억원 포함하여 200 억원 취득) *2024 년 사업년도: 200 억원 [완료] ※2024.12.18 공시에서 명시한 주주환원 방법: 자기주식 매입 -2025년 및 2026년 사업년도 각각 100억원 이상 취득예정 [진행]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는 이하와 같이 기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2023.7.12, 2024.12.18)에서 자기주식 소각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기 공시된 공정공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7.12 공시에서 명시한 주주환원 방법: 자기주식 소각 *2024 년 사업년도: 2023 년 사업년도 취득 자기주식 수량의 75%이상 소각 [완료] *2025 년 사업년도: 2024 년말 기준, 2023 년~2024 년 취득 자기주식 중 미소각된 자기주식수량의 75%이상 소각 [진행] *2026 년 사업년도: 2025 년말 기준, 2023 년~2025 년 취득 자기주식 중 미소각된 자기주식 전량 소각 [계획] ※2024.12.18 공시에서 명시한 주주환원 방법: 자기주식 소각(2025 년 및 2026년 취득분은 각각 차기 사업연도에 전량 소각 예정) -2025 년 사업년도: 2,300,000 주(액면가 1 천원/주 기준, 2023 년 및 2024 년 취득 자기주식 중 미소각된 자기주식수의 76%) [진행] - 2026 년 사업년도: 2025 년 사업년도 자사주 취득분 전량 포함하여 2023 년 및 2024 년 취득 미소각 자기주식 전량 [계획] - 2027 년 사업년도: 2026 년 사업년도 자사주취득분 전량 [계획]

주1: 취득 방법, 취득(계약체결) 결정 공시일자, 주식 종류, 취득 기간, 취득 목적, 최초 보유 예상기간, 최초 취득 수량, 변동 수량, 기말 수량 등을 정해진 표 양식에 기재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ment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현상 초래, 자본충실의 원칙 훼손, 내부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 우려, 특정주주에 대한 이익 환급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종래의 입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예컨대,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지체없이 주식 실효(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퇴직금·공로금·장려금 성격의 자기주식 지급 필요성 대두, 장기안정주주 확보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기주식의 배분, 주가안정화 도모 필요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자기주식의 교부, 소모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방어책 등 자기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경영상 기법이 가능하도록,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대두되었다.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공시, 취득한도 및 방법 , 절차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2011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 주식회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셈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자료: 법무법인 세종,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 같이 감독당국이 원활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면,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우호 세력에게 넘기거나,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등, 취득한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사익 추구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인해 상장회사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금지되었으며, 경영권 방어 목적 또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현행 법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까지 명기하여 상세히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계획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시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과거에 적용됐던) 자기주식 취득 직후 소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 등에 비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표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관련 조항 상법 개정 전후

2011.04.14 개정 전	2011.04.14 개정 후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